

임원선거 규정 개정

- 선거 공고, 모든 회원에게 서면 우편 통지 등 -

본회는 지난 10월 4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 회장 출마자에 대한 자격 강화 ▲ 유인물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 회원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전 회원에 대한 선거 공고의 서면 우편 통지 등이 포함됐다.

아래는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된 임원선거 규정. 이해를 돋기 위해 구 임원선거 규정과 개정 임원선거규정을 대비, 게재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 임원선거규정	개정 임원선거규정
임원선거 규정	임원선거 규정
1992. 2. 15. 제정	1992. 2. 15. 제정
1994. 9. 5. 개정	1994. 9. 5. 개정
1998. 3. 18. 개정	1998. 3. 18. 개정
1999. 3. 18. 개정	1999. 3. 18.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 23조에 의거하여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전과 동일
제 2조<선출할 임원> 본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사 17인, 감사 2인	제 2조<선출할 임원> 본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u>부회장 3인</u> , 이사 16인, 감사 2인
제 3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법령 및 본회 정관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3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본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령 및 본회 정관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

② 임원으로서 ①항의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는 해당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선출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사슴농장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원

2.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2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

② 임원으로서 ①항의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는 해당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제 4조<선거인> ① 임원선거는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② 총회 구성원이 아닌 회장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5조<선거관리> ① 임원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은 선거직전 이사회에서 인선한다.

③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사무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조<선거공고> 임원선거는 선거 10일 전 회보 또는 양록월간지 1에 공고한다.

제 4조<선거인> 전과 동일

제 5조<선거관리> 전과 동일

제 6조<선거공고> ① 임원선거는 선거 14일 전(발신일 기준) 서면우편으로 한다.

② 선거공고시 일시, 장소, 선거인수, 선출할 임원, 임원자격조건, 후보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를 표시해야 한다.

제 7조<후보등록> 임원 직위별 후보등록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 후보자는 후보등록신청서 및 소견서를 선거 7일전까지 임원선거관리위

1. 회장 후보자는 총 대의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으로부터 받은 회

원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u>장후보추천서와 후보등록신청서 및 소견서, 기탁금 3백만원을 선거 7일 전까지</u> <u>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 단, 회장후보추천서는 1 대의원 1인 추천에 한하며, 추천대의원 수는 정하는 수에 부족 또는 초과할 수 없다. 총 대의원수의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기탁금은 본회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2. 부회장 후보는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 후보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이사후보는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 추천한 이사후보 명단을 선거관리위원장에 제출한다.	
4. 감사후보는 선거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제 8조<회장후보 고지> 회장후보 등록 마감 즉시 인적사항과 소견사항을 대의원에 고지한다.	제 8조<회장후보 고지> 전과 동일
제 9조<득표활동> 등록을 필한 회장 후보자는 선거전일까지 득표활동을 할 수 있다.	제 9조<득표활동> 전과 동일
제 10조<득표활동의 제한> ① 다음의 득표활동은 할 수 없다.	제 10조<득표활동의 제한> ① 다음으로 득표활동은 할 수 없다.
1.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2. 금전으로 대의원을 매수하는 행위 ② ①항의 부정득표 행위의 고발이 있을 때는 선거직전 대의원 결의에 따른다.	<u>1. 허위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행위</u> <u>2. 금전으로 대의원을 매수하는 행위</u> <u>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에 고지한 소견서 외 유인물 및 출판물에 의한 득표활동</u> <u>② ①항의 부정득표 행위의 고발이 있을 때는 선거직전 대의원 결의에 따른다.</u> <u>③ ①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득표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②항의 조치에 준하여 처리한다.</u>
제 11조<등록무효> 제 10조와 관련하여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 11조<등록무효> 전과 동일
제 12조<회장선거> 회장선거는 다음 절	제 12조<회장선거> 회장선거는 다음 절

차에 따른다.

1. 소견발표 : 회장 후보자는 협회운영과 양록발전에 관한 소견을 기호(가,나,다)순으로 발표하되 후보당 20분 이내로 한다.
2. 투표 : 선거관리 간사의 대의원 호명 순으로 비밀이 보장된 기표소에서 투표 한다.
3. 개표 : 후보자 추천 참관인 입회하에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개표한다.
4. 당선발표 : 임원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발표하고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선언한다.

제 13조<부회장, 이사선거> ① 부회장, 이사의 선거는 다음에 의한다.

1. 부회장 : 당선된 회장은 부회장 정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로 선출 한다.
 2. 이사 : 회장, 부회장이 협의 추천한 이사 후보를 총회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② 총회는 추천된 후보의 일괄 또는 후보별 동의를 할 수 있다.

제 14조<감사선거> 등록한 감사후보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기립표결로 선출 하며 득표순 정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제 15조<구비서류 제출> 선출된 임원은 취임동의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공증용) 등을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조<시행> 본 규정은 1999년 3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차에 따른다.

1. 소견발표 : 회장 후보자는 협회운영과 양록발전에 관한 소견을 기호(가,나,다)순으로 발표하되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

2. 이하 전과 동일

제 13조<부회장, 이사선거> 전과 동일

제 14조<감사선거> 전과 동일

제 15조<구비서류 제출> 전과 동일

제 16조<시행> 본 규정은 2002년 10월 4일 개정 시행한다.